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의 요약

- 일반법인간 투자지분 100% 소유이면 수입배당금액의 전액, 지분이 50%(주권상장법인은 30%) 초과인 경우는 수입배당금액×50%, 투자지분 50%(주권상장법인은 30%) 이하인 경우는 수입배당금액×30%를 익금불산입함(법인간 배당이익의 이중과세방지 목적임).
- 익금불산입금액 = 수입배당액 전액 또는 수입배당액×50%(혹은 30%) ⊖ 차입금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주식가액} \times 100\%, 50\%(\text{혹은 } 30\%)}{\text{당해 본 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총액}}$$
- 익금불산입요건 : ① 취득보유일부터 3개월 이상된 주식만 해당 ② 수입배당금액명세서제출 ③ 손금불산입이자는 제외 ④ 주식이·자산총액은 적수 계산
- 익금불산입혜택 적용 안되는 경우 : ① 결산기말 3개월내 주식의 배당금 ② 기관투자가·지주회사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 ④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⑤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금

●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방법

개요와 요건 (법 제18조의3제1항·제3항)

① 일반법인의 타법인 출자시 배당소득금액의 이중과세방지

법인의 이익·소득에 약 30%의 법인세가 부과된 후 나머지 70%가 다른 일반법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경우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처리된 배당금액이 자동 익금불산입되면 여기에 30%의 법인세가 부과되어 주주에 귀속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주주의 2단계만 연결되어도 50%(=70%×70% : 세수이익 70%에 약 30%의 법인세 등이 부과되고 난 후의 잔액)만 남는 문제가 된다. 이를 법인간 출자액의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라 하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줄여주기 위해 2001년부터 본 조를 신설해서 일반법인간의 주식투자·출자에 따른 법인 발생 이익의 법인주주간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이중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사의 계열회사출자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폐지했다.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액 전액 또는 수입배당금액} \times 50\% (\text{혹은 } 30\%) \ominus \text{차입금 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다른 법인) 주식 장부가액} \times 100\%, 50\% (\text{혹은 } 30\%)}{\text{당해 법인(본 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총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금액은 받는 배당금액 전액 또는 배당액×100%, 50% 혹은 30% 범위에서 차입금이자 관련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액 전액 또는} \\
 & \text{수입배당액} \times 50\% (\text{출자비율 } 50\% \text{ 초과, 주권상장법인은 } 30\% \text{ 초과}) \\
 & \oplus \text{수입배당액} \times 30\% (\text{출자비율 } 50\% \text{ 이하, 주권상장법인은 } 30\% \text{ 이하}) \\
 & \quad (\text{소유지분 } 50\%(30\%) \text{ 초과 소유 다른 법인주식가액} \\
 & \quad \times 50\% \oplus \text{소유지분 } 50\%(30\%) \text{ 이하 소유 다른 법인 주식} \\
 & \ominus \text{당해 본 법인} \times \frac{\text{가액} \times 30\%}{\text{당해 본 법인(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 \quad \text{의 차입금이자}
 \end{aligned}$$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006. 2. 9 개정)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2006. 2. 9 신설)
3.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2006. 2. 9 개정)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2010. 12. 30 개정)

②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주식

투자대상법인의 보유지분비율이 100%인 경우는 익금불산입 비율이 전액이며, 지분비율이 50%(상장·코스닥은 30%) 초과하면 익금불산입 비율이 50%, 지분비율 50%(상장·코스닥은 30%) 이하면 익금불산입 비율이 30%인바, 이런 지분비율 전액·50%·30% 여부 계산은 배당기준일(일반적으로는 결산기말, 주권거래폐쇄일부터 말일, 즉 12월 31일 등)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결산기말 법인이라면 10월 1일자로 주주명부에 기록된 경우부터만 주식보유비율 전액·50%·30% 계산여부에 포

함시킨다.

주식주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후단신설)

③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제외, 주식·자산총액은 적수 계산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의 적용 감액조건인 차입금이자자의 경우에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은 제외한다. 또한 계산 산식에서 다른 법인 주식가액과 자산총액은 모두 적수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9. 2. 4 개정)

④ 계열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규정 폐지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특정모법인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등에 재출자하는 경우는 익금불산입을 배제 규정을 폐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은 수입배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

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⑤ **법인세신고서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법인세신고서에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⑥ 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II. 익금불산입예택이 적용 안되는 수입배당금

(법 제18조의3제2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기업간 사업적 주식투자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것인바, 사업적 투자가 아닌 경우 및 특별한 경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 ① 배당기준일(결산기말)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보유한 주식의 수입배당소득 (12월 31일 결산법인의 경우 10월 2일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액)

- ② 지주회사 및 기관투자가의 수입배당소득금액(이미 본 법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에 의거 익금불산입 적용되었으므로)
-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본 법 제51조의2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받은 수익 이중배당가능소득의 90%를 소득공제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제기되지 않음)